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0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5년 4월 22일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, 시장의 책무 등에 목적과 수단을 동일한 위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,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시장의 책무 등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규정을 삭제함
(안 제3조제1항~제3항, 안 제6조제1항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”를 “줄이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”를 “줄이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”을 “저감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<u>저감</u>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----- ----- <u>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</u>하기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저감</u>하고 <u>다회용품을 적극 사용</u>-----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②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③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
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<u>않도록</u>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, <u>체육시설</u>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,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② ----- ----- <u>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</u> -----.</p> <p>1. ~ 4.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③ ----- ----- <u>체육시설, 청소년시설</u> -----.</p> <p>④ ~ ⑥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	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②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1. ~ 4. (<u>수정안과 같음</u>)</p> <p>③ (<u>수정안과 같음</u>)</p> <p>④ ~ ⑥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체육시설”을 “체육시설, 청소년시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~② (생 략)</p> <p>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 장, <u>체육시설</u>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,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⑥ (생 략)</p>	<p>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체육시설, 청소년시설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~⑥ (생 략)</p>